

09 가산세

□ 2007.1.1. 이후부터 무(과소)신고, 납부지연가산세(납부불성실가산세)는 국세기본법에 규정

① 무(과소·초과환급)신고 가산세(국기법 §47의2, §47의3)

| 구 분 | | '06.12.31.까지 | '07.1.1. 이후 양도 | | '15.7.1. 이후 양도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|-----|--|-----|
| 무 신고 | 일반 | 산출세액 × 무(과소) 신고소득금액 / 소득금액 × 10% | 산출 세액 × $\frac{\text{무신고}}{\text{과세표준}} \times$ | 20% | $\left\{ \begin{array}{l} \text{무(과소)신} \\ \text{고} \\ \text{납부세액} \\ \text{+} \\ \text{초과신고한} \\ \text{환급세액} \end{array} \right\} \times$ | 20% |
| | 부정 | | | 40% | | 40% |
| 과 소 (초과환급) 신고 | 일반 | | 산출 세액 × $\frac{\text{과소신고}}{\text{과세표준}} \times$ | 10% | | 10% |
| | 부정 | | | 40% | | 40% |

※ 부정한 방법 :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(예 : 허위계약서 작성)

※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('10년 이후)에 따른 경과조치

- 부동산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자산 중 일반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'10.1.1.~'10.12.31.까지 양도하고 예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50% 경감하여 10% 적용

※ 예정신고기한 내 무(과소)신고 후 '18.1.1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(수정신고)하는 분부터 무(과소)신고가산세 50% 감면

※ 부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분 : 가산세 40% 적용('13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)

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(아래 ③으로 개정, 2018.12.31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99.12.31.까지 | 미달세액 × 10% |
| '00.1.1.~'02.12.31. | 미달세액 × 경과일수 × 5/10,000 |
| '03.1.1. 이후 양도분~'19.2.16 | 미납세액 × 경과일수 × 3/10,000 |
| '19.2.12. 이후 신고·부과하는 분부터~ | 미납세액 × 경과일수 × 2.5/10,000 |

③ 납부지연가산세(국기법 §47의4①)(2020.1.1.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)

⇒ 납부불성가산세와 가산금 통합(납부부분은 ㉠+㉡)

㉠ 납부불성실가산세(국기법47의4①1)

무(과소)납부세액 × 경과일수* × 가산세율(1일 2.5/10,000)

㉡ 환급불성실가산세(국기법47의4①2)

초과환급받은 세액 × 경과일수* × 가산세율(1일 2.5/10,000)

㉢ 납부지연가산세(국기법47의4①3)

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(과소납부) 세액 × 3/100

* 납부기한(법정납부기한)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
(납부일까지의 기간에서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해당)

④ 기장불성실 가산세(소득법 §115 및 소득령 §178)

- 대상 : 법인(중소기업포함)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
- 가산세 = 산출세액 × 기장미비소득금액 / 소득금액 × 10%(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/10,000)

※ 신고불성실과 기장불성실이 동시 해당 : 그 중 큰 금액 적용(기본법 §47의2⑦)

⑤ 비과세·감면 적용 배제대상 거래유형 추가(소득법 §91②, 조특법 §129①)

-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·감면세액에서 차감
- 2011.7.1.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

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 과 세 | Min |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|
| | |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|
| 감면세액 | Min | ① 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|
| | |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|

⑥ 환산취득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(소득법 §114조의2)

-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(바닥면적 합계가 85㎡ 초과)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환산 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신고·납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,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다만, 1세대 1주택 비과세(고가주택 제외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.